

## 정관 (2018년 개정판)

사단  
법인

# 대한민국항공회 정관

1960. 12. 9 시행

교통부 제2,072호 허가

1998. 1.26 개정

건설교통부 항정91200-52 허가

2000. 12.11 개정

건설교통부 항정91219-843 허가

2009. 4.30 개정

국토해양부 항정과-1429 허가

2009. 9.16 개정

국토해양부 항정과-1267 허가

2009. 12.23 개정

국토해양부 항정과-2289 허가

2011. 3. 4 개정

국토해양부 항정과- 746 허가

2012. 3.20 개정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746 허가

2014. 3.19 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2009 허가

2015. 5.13 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2710 허가

2018. 4. 9 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1446 허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이하“항공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은 Federation of Korea Aeronautics라 표기하며 약칭은 FKA로 정한다.

제2조(목적) ① 국내 제반 민간항공단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단체와 이와 관련된 모금  
항공인을 위하여



- ② 전 세계 항공스포츠를 주관하는 국제항공연맹(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FAI) 등 국제항공스포츠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국제 민간항공 문화 및 스포츠 분야 교류를 주도하며
- ③ 전 국민 항공사상 고취와 청소년 항공과학 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 ④ 항공레저스포츠의 진흥, 보급 및 장려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체력 향상과 항공레저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 ⑤ 항공문화유산 발굴 및 계승 사업에 앞장서며
- ⑥ 우수항공인의 발굴, 육성 및 표창을 통해 국가항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 제 2 장 사 업

제6조(사업)

- ① 항공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항공연맹(FAI) 총회에 대표단 파견 및 국제 민간항공단체와의 친선교류
  - 2. 국제항공연맹(FAI)이 공인하는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 단의 구성, 파견 및 관리
  - 3. 국내외 제반 항공스포츠대회 및 행사를 주최, 주관, 후원 및 승인
  - 4. 항공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 항공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5. 청소년에 대한 항공사상 양양과 항공레저스포츠를 통한 항공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제반 활동
  - 6.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학교 및 생활 체육의 보급과 장려
  - 7. 항공스포츠 선수 · 지도자 · 경기임원(경기운영, 심판, 계측 등)의 발굴, 지도 양성 및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 8.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기술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 9. 일반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 분야 제반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
  - 10. 일반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전시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업



11. 국제항공연맹 경기 규정의 보급 및 각종 항공 기록의 공인
  12. 항공레저스포츠 장비의 규격관리, 기술검사 및 안전관리와 시험관리 사업
  13.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면허증 발급 및 관련 시험관리
  14. 일반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에 관한 정보, 통계 및 제반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및 홍보사업
  15.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콘텐츠 개발사업
  1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17. 가맹단체 및 전국규모 연맹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18. 항공문화유산 발굴 및 계승에 관한 사업
  19.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항공레저스포츠 발전에 관한 사업
  20. 일반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연구용역 사업
  21. 일반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정부 정책 제안 및 공공단체에 대한 자문
  22.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협력업무 수행
  23.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교육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4.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시설 건립 추진 사업
  25. 항공레저스포츠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설립, 임원파견 및 지원사업
- ② 항공회가 제1항 19호에 의한 수익 사업과 24호 및 25호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항공회가 제6조(사업) 제1항의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성) 항공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의한다.

- ① 개인회원 : 항공분야에 현재 종사 중이거나, 관심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항공회에 가입한 개인으로 특정 분과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 //
- ② 단체회원 : 항공회에 가입한 가맹단체에 소속된 회원

1. 가맹단체는 항공스포츠 종목을 관장하거나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단체로서 항공회는 종목당 하나의 단체를 회원으로 인정하며 한국모형 항공협회, 한국파라모터협회,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한국열기구협회, 한국소아링 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로 한다.
2. 항공회는 가맹단체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특별회원 : 항공 및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사업이나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국도교통부
- 특별회원?
- 

단체나 항공분야 관련 비영리단체 및 대학과 연구기관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항공 회에 가입한 단체

④ 명예회원 : 항공분야 발전 및 항공스포츠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항공회에 물심양면으로 협찬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개인이나 단체.

#### 제8조(회원의 가입)

- ①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항공회 이사회의 결의로 가입을 확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단체 및 개인은 항공회가 정하는 규정에 명시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승인된다.
  1. 회원가입 신청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증이 발급되며, 회원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 제9조(회원의 권리) 항공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항공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기대회와 행사 및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항공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권리와 균점할 권리
3. 항공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는 권리
4. 항공회의 인적 및 물적 재산을 이용할 권리
5. 할당된 총회 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6.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특별회원? ?

#### 제10조(회원의 의무)

- ① 항공회의 단체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이 됨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항공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항공법 등 관련 법규, 제반 비행 안전 규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국제항공연맹 및 본 회의 경기규칙, 제반 규정, 지시사항 준수
  5.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결과서를 포함하여 임원선임 결과를 항공회에 보고 할 의무
  6. <삭제>
  7. 자체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공회에 보고 할 의무
  8. 항공스포츠 관련 분쟁 시 회원은 자체심의 내용을 심의종결 후 7일 이내에 항공회에 보고하며 항공회의 심의기구가 상고기구로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9. 항공회가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항공회가 요구 시 감사를 받을 의무(감사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항공회는 간접단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18.04.09  
APPROVED  
印

10.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항공회에 승인 또는 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

11. 조직이나 각종 규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항공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②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항공법 등 관련 법규, 제반 비행 안전 규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

2. 국제항공연맹 및 항공회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 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항공스포츠 관련 분쟁 시 항공회가 상고기구로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삭제>

제11조 <삭제>

특약금액?

3000원

제12조 <삭제>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

① 항공회는 단체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결의로 제명하며 개인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2. 항공회의 사업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시

3. 금치산 및 파산선고 등의 처분을 받았을 시

4. 단체의 해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단체운영이나 활동이 어려울 시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항공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③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 기타 항공회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공회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단체회원이 해산되고 항공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었던 개인회원 자격은 지속 유지된다.

##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항공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40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4. 감사 2명

② 가맹단체의 장과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항공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5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① 항공회는 이사회에 추천과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수)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항공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④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공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직위를 당연히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4. 정관 제14조 3호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2년간 항공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2년간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할 때까지이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증원 또는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에 새 임기를 더한 것으로 한다.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항공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해당 단체나 직위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7조의1 <삭제>

제17조의2 <삭제>

제17조의3 <삭제>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1. 항공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항공회의 모든 회무를 관장하고 총괄 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장이 선임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항공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

1. 감사는 항공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무실무를 총괄 관장하며 가맹단체 사무국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1 <삭제>

## 제 5장 대 의 원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항공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 소집은 늦어도 개최 1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항공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맹단체에 소속된 대의원에 대하여는 가맹단체에서 통지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 회의결과는 주무부 관청에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제21조 <삭제>

####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총회의 구성원은 총회 구성원 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항공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단, 대리인은 1인의 대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3조(대의원의 자격)

① 대의원은 총회 공고일 현재 항공회의 분과위원회 및 가맹단체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2주 이내에 항공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4조(대의원의 수)

① 가맹단체에서는 항공회에 등록한 유효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 등록된 유효회원이 50명 미만인 가맹단체는 대의원을 1명만 선출할 수 있다.

②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회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종목별 대의원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각 가맹단체는 소속 유효회원의 명부를 매 분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항공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의안 제출)

① 총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결로써 총회에 제출된 안건

2.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의안



### 3. 의장의 요구로 긴급 제출되는 안건

② 의안은 총회 개최일 1주 전까지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임원(상근이사 제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6. 항공회 및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정관의 변경과 항공회의 해산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 또는 녹음하여 의장과 출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 후 항공회에 비치 보관한다.

## 제 6 장 이 사 회

###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이사회 소집은 개회 1주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1(의결권 대리행사) 이사는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2인 이상의 이사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불참하는 이사는 항공회에 이사회  
개회 최소 2일 전까지는 항공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항공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등 총회에 부의 할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장 및 이사의 임명 추천 및 해임 요청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항공회 운영상 중요사항

#### 제30조의1 <삭제>

#### 제31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부회장이 대행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해임의 경우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신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 ⑥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 ⑦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 또는 녹음하여 의장과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 후 항공회에 비치한다.

#### 제32조의1 <삭제>



## 제 7 장 각 종 위 원 회

제33조(위원회의 설치) 항공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고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항공회는 산하조직으로 기능별 위원회와 종목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① 기능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2. 상별심의위원회
3. 자격심의위원회

가. 위원 임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종목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경량항공기 분과위원회
- 나. 패러글라이딩 분과위원회
- 다. 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
- 라. 일반항공 분과위원회

- ③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사 무 처

제35조(사무처의 설치) 항공회는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1. 사무처에는 사무처장(당연직 이사)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일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직원임명은 회장이 한다.

제35조의1 <삭제>

\* 사무처 설치 여부?

## 제 9 장 경 기 대 회

제36조(경기대회의 종류) 항공회가 지원하는 항공스포츠 관련 경기대회의 종류는 檢査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연맹(FAI)이 승인한 대회로서 항공회 회장이 그 개최 및 참가를 승인한 국제대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공회 회장과 협의하여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3. 항공회가 직접 주최, 주관하거나 회장이 승인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기대회
4. 대회의 일정조정, 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대표선수의 선발 및 육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0 장 재 정 및 회 계

제37조(회계연도) 항공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재원) 항공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4. 사업수입금
5. 각종 수수료(자격증 발급수수료 및 대회승인비 등)
6. 기타 잡수입금

제39조(회비의 책정 및 납부) 항공회 회원의 회비책정과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기준은 항공회의 매 사업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단체회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은 단체회비 이외의 임원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항공회 상근임원 또한 같다.

제40조(회비의 징수)

- ① 개인 및 단체회원의 회비는 항공회로 직접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 ② 가맹단체의 경우 항공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갈음한다.
- ③ 항공회는 회비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계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다.

제41조 <삭제>



제42조(예산 및 결산보고서 제출)

- ① 항공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및 항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③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서와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자산의 처분) 필요에 의해 항공회 자산의 처분이 요구될 때에는 기본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고 운영자산은 이사회 의결로 처분하되 기본재산 및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자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한다. 단,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 <삭제>

## 제 11 장 시 · 도 항 공 회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 제 12 장 시 · 도 항 공 회 총 회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 제 13 장 보 칙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 제 14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②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감사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③ 이 정관 제24조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항공회 회장이 인준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3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